#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 의 안<br>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09년 5월 19 일
발 의 자 : 정영길의원외7인

## 1. 제정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쟁)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 근거 규정(안 제3조)
나.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내용 규정(안 제4조)
다.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규정(안 제6조)
라.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 규정(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관련사항 : 관련 있음
다. 기 타
1) 제정조례 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2.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보훈청장이 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2만원 지급
2. 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3. 기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

**제5조(수당 등 신청)** 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사망위로금은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지급대상자 결정)** ①군수는 수당을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 등 관련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지방보훈청 등 관련기관에 확인하여 수당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대상자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수당의 지급은 매월 말일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관외 전출 또는 사망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9조(환수)** 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및「성주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참전등록번호 | | | | | | | | | | | | |
|---|---|---|---|---|---|---|---|---|---|---|---|---|

##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 | | | | |
|---|---|---|---|---|---|
| 참 전 유공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해당사유 | 1. 6.25참전유공자 2. 월남참전유공자 | | | |
| 수당수령 예금계좌 | 예금주 |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

성주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성 주 군 수 귀하

| ※ 구비서류 :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br>2.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br>(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br>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수 수 료 |
|---|---|
| | 없 음 |

[별지 제2호 서식]

| 참전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 | | | | |
|---|---|---|---|---|---|
| 참 전 유공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 | 사망 일자 | | | |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예금주 | | 금융기관명 | |
| | | | 계좌번호 | | | |

성주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

성 주 군 수 귀하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1. 사망자의 사망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br>2. 사망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없 음 |